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請求論文

조선시대 제주유민의 발생과 울산 지역의 ‘두모악’
Occurrence of Jeju Migrants in Choseon
Dynasty Period and ‘Dumoak[豆毛惡]’ in Ulsan
District

2018년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송윤철

조선시대 제주유민의 발생과
울산 지역의 ‘두모악’

지도교수 이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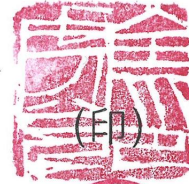
이 논문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송윤철

宋潤哲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전호태



審査委員 양상현



審査委員 이종서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8년 12월

국 문 요약

조선시대 제주유민의 발생과 울산지역의 ‘두모악’

송윤철

두모악(豆毛惡)은 한라산의 별칭으로 두독야지(豆秃也只), 두무악(頭無惡), 두무악(頭無岳), 두모악(豆毛岳) 등으로 표기되며 조선시대에 제주도에서 이탈해 남해안 일대에 정착한 제주유민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두모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많지 않다. 이것은 자료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유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토지와 농업에서 이탈한 농민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두모악과 같은 지역 특수성에 따른 해양 유민은 일반적인 연구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다. 이전까지의 연구들은 제주도민이 유민되는 과정과 호적을 통한 사례분석이라는 연구성과를 가진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1629년(인조 7년) 이후의 두모악들을 다루지 못했다.

2012년 7월부터 진행된 ‘울산부호적대장 전산화 사업’을 통해 『울산부호적대장』의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울산에 거주했던 두모악에 대한 자료의 이용과 분석이 용이해졌다. 특히 두모악들이 기록된 1609, 1672, 1684, 1705, 1708년의 호적은 모두 전산화되어 울산지역 두모악의 사례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호적은 호구(戶口)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가계를 분석해서 흐름을 정리할 수 있었다.

1장에서는 본 논문의 대상을 특정하고 기존의 연구사를 정리했다. 그리고 대상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와 자료의 분석 및 정리방법을 밝혔다.

2장에서는 이전 연구들의 성과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1차 자료를 종합하여 제주도민들이 이탈한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제주도를 이탈한 제주유민들이 정착한 장소와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자연·지리적인 특성 상 농업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해산물 혹은 목축물 등을 무역품으로 삼아 살아갔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제주도에 과도한 조세와 그에 따른 부정수탈이 부담되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제주도민들은 유민이 되었고 두모악으로 불리며 육지 연안에 정착했다. 해당 지역의 수령들은 이들을 돌려보내야 했지만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며 유랑하던 이들의 능력은 큰 이익을 가져다 줬다. 특히 제주도처럼 해산물을 바쳐야 하는 연안지역의 수령들은 그들을 돌려보내기는커녕 이들을 흠여지지 않게 잘 모아서 자신의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수군에서 역시, 두모악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했다. 수군은 역이 고되고, 온갖 요역에 동원되었기에 천인이거나 죄인 등으로 충원해야 했을 정도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군의 질은 떨어져갔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모악은 수영에 소속되어 배를 부리는 핵심적인 위치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3장에서는 전산화된 『울산부호적대장』을 분석하여 ‘울산에 거주했던 두모악’이라는 특정 사례를 분석 및 정리해서 대상에 대한 추이를 확인했다. 『울산부호적대장』에는 5개 식년에 걸쳐 두모악들이 기록되었다. 다른 자료에서는 알 수 없는 두모악들의 신상정보가 수록되었다. 크게 17세기와 18세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7세기 초의 두모악은 울산민과 구분되는 별개의 집단이었으며 동시에 직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모악들은 울산민들

과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이어갔다. 17세기 말이 되면 두모약들의 거주지가 한 곳으로 고정되었고 관청의 통제가 강해졌다. 두모약이라는 명칭은 점차 집단보다는 직역에 가까워졌다. 18세기 초로 넘어가면 두모약들에게 병영군(兵營軍)이나 부군(府軍)과 같은 직역들이 함께 표기되기 시작한다. 이는 두모약들이 점점 울산민에 가까워 졌음을 보여준다. 이후 1720년 대현면 외성황당리에 단 1명이 나오는 것 이외에는 호적에서 두모약은 사라진다. 호적 상에서 두모약이 사라진 이유는 조선정부의 양역정책으로 인한 각 관청의 군액 제한으로 추정된다. 울산에서는 더 이상 자의적으로 두모약들을 모집해 소속시키기 힘들어 진 것이다. 18세기 후반인 1765년이 되면 두모약들은 침수군(沈水軍)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18세기 초에 침수군을 겸한 두모약들이 기록되었고, 두모약들 중 호적 정보가 변조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여기에 두모약들 역시 제주출신이라는 굴레와 구분을 거부하며 울산민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관청과 두모약들의 이해가 일치한 울산에서는 호적에서 정보를 변조해 이전 식년과의 연관성을 없애고, 해체되어가는 두모약들을 침수군이라는 새로운 직역으로 전환시켰다고 추정된다.

주요어 : 제주, 제주도, 유민, 제주유민, 두모약, 호적, 울산부호적대장

《목 차》

1. 머리말	1
2. 제주도민의 제주도 이탈과 ‘두모악’의 발생	3
1) 제주도민의 제주도 이탈과 정부의 대책	3
2) 제주유민의 육지 연안 정착과 ‘두모악’의 발생	8
3. 울산 지역 ‘두모악’의 구성과 변화	12
1) 17세기 『울산부호적대장』의 ‘두모악’	12
2) 18세기 ‘두모악’의 해체와 그 원인	18
3) ‘두모악’의 소멸과 ‘침수군’의 등장	23
4. 맺음말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1

《표 목차》

<표-1> 17세기~19세기 제주도 진상 내역	5
<표-2> 1609년 두모악 호구 수	13
<표-3> 1609년 두모악의 호적 기재 양식	13
<표-4> 1672년 두모악 호구 수	15
<표-5> 『울산부호적대장』에 나타난 두모악 ‘신호’ 분석 (단위 : 호)	16
<표-6> 1684년 두모악 호구 수	16
<표-7> 『울산부호적대장』 두모악 가계 간 혼인 비교	17
<표-8> 1705년과 1708년, 『울산부호적대장』의 두모악 직역 (단위 : 명)	20
<표-9> 1672년~1708년 부내면 병영 관련 직역자 (단위 : 구)	22
<표-10> 1705년~1708년 침수군	24
<표-11> 1705년~1765년 침수군 호구 수	24
<표-12> 『울산부호적대장』에 나타난 정보 변조 사례	26

1. 머리말

제주도는 자연·지리적인 특성상 농업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대신 육지에서 나지 않는 여러 가지 특산품들이 있었다. 이 특산품들은 제주도민들에게는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조선정부는 제주의 특산품들을 세금으로 정해 거뒀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제주도민들에게 특산물 생산을 위한 역(役)을 부과했다. 세금과 역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과 제주도의 토호들이 공납과 진상을 빙자해 자의적인 수탈까지 자행하면서 제주도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결국 제주도민들은 제주도를 떠나 유민(流民)이 되었다. 이들이 남해안의 여러 고을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니, 이들이 바로 두모악(豆毛惡)이다. 두모악은 한라산의 별칭으로 두독야지(豆秃也只), 두무악(頭無惡), 두무악(頭無岳), 두모악(豆毛岳) 등으로 표기되며 조선시대에 제주도에서 이탈해 남해안 일대에 정착한 제주유민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¹⁾

두모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많지 않다. 이것은 자료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적은 기록으로 많은 부분을 추측과 가설을 통해 연구해야하기 때문에 축적된 연구성과가 많지 않다. 또한 유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토지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세 사회를 전제하고 있다. 토지를 이탈한 농민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모악과 같은 지역 특수성에 따른 해양 유민은 일반적인 연구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다.

두모악에 관련된 최초의 연구는 1966년 김태능의 논문으로 제주도민의 유망과 이탈, 1629년(인조 7년)의 출륙 금지를 연구했다.²⁾ 한영국은 1981년 논문에서 두모악이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삼아 소개하고 발생 원인을 찾았다.³⁾ 조선왕조가 중앙집권 지배체제를 확립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과중한 역을 지움으로써 과도하게 수탈했다는 분석을 했다. 그리고 그 유민들의 추이를 『울산부호적대장』을 통해 추적했다. 이후 두모악에 대한 후속 연구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이 주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자료 부족으로 인해 관심 밖에 머물렀다는 증거이다.

2000년대 이후, 두모악은 지역사의 관점에서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녀라는 개념을 통해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다. 박찬식은 제주의 해녀를 연구하면서 제주도민들의 전복 진상과 그에 따른 역의 부담으로 인한 이탈을 다루었다.⁴⁾ 장혜련은 15~17세기에 제주도민들이 유민(流民)이 되는 것을 조선정부의 중앙집권적 체제가 강화되면서 생긴 사회현상으로 파악했다.⁵⁾ 김나영은 제주유민들 중에서 포작이라는 명칭을 특정하고 『대정현일과리호적중초』 등 제주 대정현 지역에 남은 호적 자료들을 통해 몇 명의 가계를 분석했다.⁶⁾ 이영권은 제주유민들의 발생 배경과 원인,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주유민들의 성격을 규정했다.⁷⁾ 이 연구들은 제주도민들의 이탈과 유망, 제주유민들이 생활과 정착, 그리고 호적을 통한 사례 분석이라는 연구 토대를 완성했다는 연구성과를 가진다.

1) 『成宗實錄』 권262, 성종 23년 2월 8일 기유

2) 김태능, 「濟州島民의 流亡과 出陸禁止」, 『탐라문화』 제27권, 1966.

3) 한영국, 「豆毛岳考」,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서울: 지식산업사, 1981.

4) 박찬식,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회』 제19호, 2004.

5)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실태와 사회적 지위」 『역사와경계』 제69호, 부산경남사학회, 2008.

6) 김나영, 「조선후기 호적자료를 통해 본 鮑作의 사회적 지위」 『탐라문화』 제3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7) 이영권, 「15~17세기 제주유민의 사회사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012년 7월부터 진행된 ‘울산부호적대장 전산화 사업’을 통해 『울산부호적대장』의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울산에 거주했던 두모약에 대한 자료의 이용과 분석이 용이해졌다. 특히 두모약들이 기록된 1609, 1672, 1684, 1705, 1708년의 호적은 모두 전산화되어 울산지역 두모약의 사례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

호적은 호구(戶口)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가계를 분석해서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 호적의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직역, 혼인, 자손 3가지 정보가 주목된다. 직역은 두모약들의 사회적 지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정보이다. 호적에서 두모약이라는 명칭은 직역을 적는 부분에 기록되었다. 혼인은 두모약들이 울산민과 동화되었는지 구분되었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다. 두모약들이 울산민들과 혼인하여 섞였는지 혹은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했는지를 통해 두모약의 유지와 해체를 가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모약들의 자손들이 이후 어디서, 어떤 직역으로 살아갔는지를 통해 집단의 소멸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들의 성과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1차 자료를 종합하여 2장에서 제주도민들이 이탈한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제주도를 이탈한 제주유민, 즉 두모약들이 정착한 장소와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전산화된 『울산부호적대장』을 통해 ‘울산에 거주했던 두모약’이라는 특정 사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울산의 지역사를 풍부하게 하고 더 나아가 두모약처럼 토지에 기반하지 않는 해양 유민의 연구에 도움 되고자 한다.

2. 제주도민의 제주도 이탈과 ‘두모악’의 발생

1) 제주도민의 제주도 이탈과 정부의 대책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농사가 힘든 지역이다. 화산재로 덮인 토질은 척박했고 자갈이 많이 깔려있으며 흙의 깊이도 얇았다. 현무암 지대의 특성 상, 암석의 구멍을 통해 물이 지하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물을 가뭇야 하는 논농사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파종 전에도 밭을 여러 번 갈아야 했고, 파종 이후에는 소와 말을 쟁기로 끌어서 여러 번 밟아주어야 했다.⁸⁾ 그러지 않았을 경우 싹이 나다가 말라죽어 버렸다. 문제는 이렇고도 충분한 수확을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즉, 땅으로부터 나는 생산물에만 의존하여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자연환경 아래서 제주도민들은 일찍부터 농사 이외에 다른 생산을 겸해야 했다. 대표적으로 고기잡이를 포함한 전복과 미역 등의 수산물을 채취했다. 이외에도 소나 돼지, 말 등의 목축을 통해 생계를 보완했다.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생산물들을 육지와의 교역품으로 삼아 해상무역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다. 이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배를 타고 왕래하며 중한(中韓)에서 무역한다.’라고 기록되어 삼국시대부터 무역한 것을 알 수 있다.⁹⁾ 『고려사』에서도 ‘탐라는 지질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고기잡이와 배 타는 것으로 생계를 도모한다.’라고 서술하여 토지의 척박으로 인해 교역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⁰⁾ 『조선왕조실록』 역시 제주의 무역과 관련하여 일관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¹¹⁾

예를 들어 ‘그곳은 농장(農場)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로지 수산업을 업(業)으로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는 기록과 ‘도내 제주(濟州)는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서, 가난한 사람은 모두 말을 사서 생계를 마련한다.’라는 기록이 있다.¹²⁾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배를 타고 해산물 채취하는 것은 제주도의 기본적인 생활양식이었다. 토지가 척박한 자연적인 환경이 더해지면서 배를 타고 육지와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고려 후기가 되면 제주도의 해상무역에 말이 추가된다. 제주도에서 말을 키운 것은 원 간섭기 당시 삼별초를 토벌한 몽골군이 제주도는 경사가 완만하고 기후가 온화하며 말을 해칠 맹수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숲이 우거져 넓지 않았던 제주 중산간 지역을 초원으로 만들어 말 목장을 만든 것이 시작이었다. 조선시대가 되면 말은 제주도민들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으로 표현될 정도로 육지와의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물이 되었다. 해산물과 말의 무역은 제주도의 척박하고 특수한 자연환경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생긴 필연적인 결과로 봐도 무방하다.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는 등 반독립적인 속국에 가까웠다. 1105년 고려 숙종 시기에 탐라군(耽羅郡)으로 개칭되면서 고려의 한 지방이 되었어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고, 토착 지배자인 성주(星主)가 대를 이어 세습되는 등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계속 허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고 조선의 행정력이 제주도에 미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조선정부에서는 양전(量田)을 실시하고 과전법(科田法)에 따라 전

8) 『世宗實錄』 권45, 세종 11년 8월 26일 경자

9) “乘船往來，市買中韓。”(『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洲胡)

10) “耽羅，地瘠民貧，惟以海產，乘木道，經紀謀生。”(『高麗史』 권8 세가8, 문종 12년 8월 을사)

11) 『世宗實錄』 권5, 세종 1년 9월 11일 계축 ; 『世祖實錄』 권11, 세조 4년 2월 7일 병신

12) 『中宗實錄』 권98, 중종 37년 6월 13일 임진 ; 『世宗實錄』 권29, 세종 7년 9월 4일 경자

국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했다. 제주도 역시 1413년(태종 13년)에 처음으로 양전을 실시했다.¹³⁾

그러나 6년 뒤인 1419년(세종 1년)에 또다시 지시한 것을 보면 첫 번째 양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번째 양전 당시의 기록을 보면 ‘혹 말하기를, 제주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은 조밀하여, 농사와 누에치기를 힘쓰지 않고, 수륙(水陸)의 소산으로써 장사하여, 생계를 삼고 있으므로, 밭의 조세를 받을 것이 없다.’라는 대목을 통해 일찍부터 제주도 양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결국 제주도에 토지세를 거두려고 한 조선정부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7년 뒤인 1426년(세종 8년)에 제주의 전조(田租)를 육지보다 50%를 감면했다.¹⁵⁾ 1437년(세종 19년)에는 제주에서는 토지의 등급을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1결당 10두를 거두어 1/10을 거두는 것으로 결정했다.¹⁶⁾ 하지만 이 역시 1498년(성종 24년)이 되면 공법(貢法)의 시행을 위한 양전을 포기해 버린다.¹⁷⁾ 조선정부에서는 제주도가 농사에 부적합하며 농산물을 세금으로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래서 조선정부는 쌀이 아닌 여타 생산물들을 공납 혹은 진상으로 수취했다.

공납은 조(租), 용(庸), 조(調)의 세법의 구성요소 하나다. 지방의 특산물을 지방의 호(戶)들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상공(常貢)과 비정기적으로 부담하는 별공(別貢)이 있었다. 제주도의 공납 품목으로는 크게 우마(牛馬)와 같은 동물, 전복으로 대표되는 해산물, 제사에 쓰이는 굴 등의 과실류, 그리고 약재류가 있었다. 이 중에서도 말은 가장 중요했던 품목으로 조선정부에서는 강력한 통제를 가해 자유로운 무역을 금지시킬 정도였다.¹⁸⁾

여기에 진상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의 특산물을 별도로 바쳐야 했다. 진상은 본래 세금이 아니라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심을 표하는 의미에서 질 좋고 귀한 물품을 바치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좋은 물건이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바치는 선물이자 예물일 뿐이었다. 그러나 행정제도가 정비되면서 행정권이 지방까지 미치면서 더 이상 물건을 알아서 바치기 기대하는 대신에 군주가 직접 명령하면 바쳐 올리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신하의 충성심의 표현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사실상 세금이 된 것이다.¹⁹⁾

다른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백성의 입장에서는 공납과 진상을 구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다. 공납이나 진상이나 궁극적으로는 백성에게서 지방의 특산물을 징수하여 왕에게 올려 보냈기 때문이다. 조선정부에서는 이런 공납과 진상을 거두기 위해 백성들에게 바칠 물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역(役)이나 물품들을 운반할 역을 부여했다. 이는 백성들에게 굉장한 부담이었고 세금의 대부분을 특산물로 내야 하는 제주도민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었다.²⁰⁾

13) 『太宗實錄』 권26, 태종 13년 7월 12일 기축

14) 『世宗實錄』 권4, 세종 1년 7월 병진

15) 『世宗實錄』 권33, 세종 8년 7월 8일 기해

16) 『世宗實錄』 권78, 세종 19년 7월 9일 정유

17) 『成宗實錄』 권283, 성종 24년 10월 6일 정묘

18) 『太宗實錄』 권18, 태종 5년 4월 14일 기묘

19) 장윤희 「조선후기 제주도 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5쪽.

20)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21쪽.

<표-1> 17세기~19세기 제주도 진상 내역²¹⁾

연도 품목(단위)		1601년	1653년	1703년	1793년 (추정)	1824년 (추정)	1854년 (추정)
		동물류	말(馬) 소(黑牛) 노루·사슴가죽	? ? ?	178필 ? 123령	453필 20두 100~110령	379필 40두 135령
해물류	추복(槌鰻) 조복(條鰻) 인복(引鰻) 회전복(灰全鰻) 오징어	3030첩 230첩 910첩 ? 680첩	5346첩 265첩 1115첩 ? 1075첩	약 3900첩 약 260첩 약 1100첩 약 3860첩 약 860첩	1423첩 113첩 354첩 ? 364첩	1347첩 107첩 377첩 ? 349첩	1630첩 131첩 377첩 ? 414첩
과실류	유자(柚子) 감자(柑子) 금귤(金橘) 유감(乳柑) 동정귤(洞庭橘) 산귤(山橘) 청귤(靑橘) 당금귤(唐金橘)	1595개 31525개 3420개 4290개 6490개 1040개 3330개 ?	? 63680개 2680개 5000개 5060개 760개 1250개 ?	1460개 25842개 900개 4785개 2804개 828개 876개 678개	1710개 31253 개 ? 2646개 2838개 700개 780개 1667개	1440개 28341 개 ? 2762개 2954개 580개 816개 1699개	1640개 34902 개 ? 2369개 2698개 690개 859개 1778개
약재류	백랍(白蠟) 표고(藜古) 치자(梔子) 진피(陳皮) 청피(靑皮) 향부자(香附子) 무환자(無槌子) 석곡(石斛) 지실(枳實) 후박(厚朴)	92편 28두 150근 ? ? ? ? ? ? ?	90편 32두7승 160근 48근 30근 78근 8량 11량 6근 32근	? ? 112근 48근 30근 ? ? ? ? ?	96편 16두 승 145근 55근 27근 70근 8량 8량 5근 30근	96편 16두8 승 149근 48근 ? 70근 12량 11량 7근 32근	96편 20두4 승 149근 48근 30근 78근 12량 11량 6근 32근

출전 : 1601년- 『南槎錄』, 1653년- 『耽羅誌』, 1703년- 『南宦博物』 & 『耽羅巡歷圖』, 1793년(추정)- 『濟州大靜旌義邑誌』, 1824년(추정)- 『耽羅事例』, 1854년(추정)- 『耽營事例』

<표-1>은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제주도에서 진상한 물품들의 종류와 수량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제주도에서 바쳐야 하는 특산물의 종류와 수량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과하는 물품 자체가 많았음을 알려준다. 국가의 수취량 책정이 이미 제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에게 부과된 역들 중에서도 제주도민들이 가장 꺼려했던 여섯 가지 역이 있었는데 이를 육고역(六苦役)이라고 칭했다. 육고역은 시대

21) 박찬식,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탐라문화』 제16호, 탐라문화연구소, 1996, 264쪽.

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만 보통 목자(牧子), 과직(果直), 잠녀(潛女), 포작(鮑作), 선격(船格), 답한(番漢)을 지칭했다.²²⁾

목자는 말을 키우는 역이고, 과직은 꿀과 같은 과일을 생산하는 역이었다. 잠녀와 포작은 해산물을 채취하던 역이었고, 선격은 배에서 노를 젓는 역으로 특산물의 운반에 동원된 역이었다. 제주도민들이 맡기 싫어했던 육고역 중 4개 역이 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역이었고, 1개 역은 특산물의 운반과 관련된 역이었다. 국가에서 부과한 역은 이미 제주민에게 큰 부담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은 공납이나 진상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필요량 이상 수취하여 자기 잇속을 챙겼다. 이는 여러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① 만일 청렴하지 않은 관리가 있어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겨 명목을 교묘히 만들어 거둬들이면 한이 없으므로 1년 작업한 바로도 그 역에 응할 수가 없다. 그 관에 바치는 고통과 이서(吏胥)들 농간의 폐단이 끝이 없으므로 또한 그 어찌 생계의 보탬을 바랄 수 있는가.²³⁾

② 본주(本州)가 공물로 바쳐야 할 전복(鰓魚)의 수량은 매우 많고, 관리들이 공무(公務)를 빙자하여 사리(私利)를 도모하는 것이 또한 몇 배나 됩니다. 포작배들은 그 고역(苦役)을 견디지 못하여 유망(流亡)하거나 익사(溺死)하여 열에 두셋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물을 거두는 것의 옛날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²⁴⁾

③ 기타 해채(海菜)는 수령(守令)이 헐값으로 억지로 사들여서 다시 이들에게 육지에다 내다 팔아 오게 하여 곱값으로 독려하여 받아서 자기를 살찌게 하는 밑천으로 삼는다. 세월이 지나가자 잠녀(潛女)와 포작배(浦作輩)가 곳곳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참혹하고 상심함이 이와 같았음에 야.²⁵⁾

위의 기록들은 제주도에 파견, 혹은 유배를 온 양반들이 직접보고 남긴 기록들이다. ①은 이견(李健)의 『제주풍토기』에 나오는 기록이다. 관리의 탐욕으로 없는 명목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는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의 기록으로 관리들이 공무(公務) 즉, 공납이나 진상을 핑계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은 이증(李增) 『남사일록』에 나온 기록으로 관리가 적극적으로 두모악들을 착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방관의 자의적인 수탈은 제주도의 지리적인 환경에 기인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조선정부는 제주도에 가장 강력한 행정력을 행사했지만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세세하게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제주도의 목사(牧使)가 제주도의 두 현감(縣監)까지 총괄한 것 역시 제주도의 지리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²⁶⁾

제주도의 지리적인 영향은 제주도의 토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토호들은 조선의 중앙 집권적인 지배체제 안에서 토관(土官)이라는 특수한 향직(鄉職)으로 포섭되었다. 제주도에 토관이 언제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2) 이영권, 「15~17세기 제주유민의 사회사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38쪽. ; 장혜련,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21쪽.

23) “而若有不廉之官，恣生貪污之心，則巧作名目，徵索無算，一年所業，不足以應其役。其官門輸納之苦，吏胥舞奸之弊，罔有紀極，「泥」「又何」望其衣食之資乎。” (『譯註 濟州古記文集』, 제주문화원, 2007, 173쪽.)

24) “本州所責鰓魚之數極廣，官吏之憑公營私又且倍蓰，浦作輩不堪其役流亡溺死十存二三，而徵斂供應不減於舊。” (『南槎錄』 1601년(선조 34년) 9월 22일 丙辰.)

25) “其他海菜守令以廉價勒買，復令此輩貿販於陸地，倍價督納肥己之資，歲增月滋，潛女浦作輩處處訴冤，慘目傷心有如。” (『南槎日錄』 1679년(숙종 5년) 12월 초7일 戊辰.)

26) 김동진,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1991, 49쪽.

다만 1394년(태조 3년)에 이미 토관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인 고려 말기로 추정된다.²⁷⁾ 이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처럼 조선정부로부터 인신(印信)을 받았기 때문에 수령들과는 함께 행정에 참여했다.

제주의 지형이 동서로 1백 20여 리요, 남북으로 60여 리인데, 정의(旌義)와 대정(大靜)이 동과 서의 두 모퉁이에 있고, 목사(牧使)가 중앙에 있으니, 비록 토관(土官)이 없더라도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 없는데, 따로 도진무(都鎭撫)와 동서도사(東西都司)와 좌우 도주관(左右都州官)을 설치하여 모두 관인(官印)을 받아 가지고 수령과 대등이 되게 하고, 또 독소(蠶所) 10을 두어서 각처에 있는 토관의 인원수가 70여 인에 달하는데, 각기 아전과 군졸을 거느리고서 권리를 펴고 세력을 빙자하여, 혹은 수령에게 아부하고 혹은 민생을 굶어 먹는데, 관은 많고 백성은 적어서 폐만 있고 이익 됨은 없습니다.²⁸⁾

위의 기록은 세종 시기의 『조선왕조실록』 기사로 토관들은 수령들과는 별개로 제주도민들에 대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주도민들을 수탈했음을 보여준다. 토관들은 제주의 토착세력들로서 제주의 실정에 밝았기 때문에 수령들보다 제주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수령은 막강한 중앙권력을 배경을 가지고 지방관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과 지방 토착세력인 토관들은 대립관계였지만 수령들은 토관들의 도움 없이는 제주도를 통치할 수 없었다. 조선의 중앙집권적인 기초 아래, 제주도민들은 수령과 토관에게 이중으로 수탈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²⁹⁾

국가의 과도한 과세와 수령과 토호의 이중 수탈까지 겹치면서 제주도민들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과도한 부담과 지방관들의 수탈을 이기지 못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를 이탈해 유민(流民)이 되었다. 유민의 발생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역은 줄어들지 않았다.³⁰⁾ 제주도민들이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제주도에 잔류한 사람들은 이탈한 제주도민의 역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는 잔류한 제주도민들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 또한 제주도를 이탈하는 유민 발생의 악순환은 그칠 줄을 몰랐다.³¹⁾

이미 1417년(태종 17년)에 제주의 각사노비(各司奴婢)와 군정(軍丁) 등 역(役)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장삿배를 통해 육지로 도망친다는 기록이 나온다.³²⁾ 세종 시기에도 제주도민들이 역을 피하기 위해 육지로 도망쳤다고 기록되었고 1477년(성종 8년)에 이르러 수 백여 명으로 언급된다.³³⁾ 16세기에 들어서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나 1510년(중종 5년)의 기록에는 김해(金海) 도요저리(都要渚里)라는 마을 한 곳에서만 1천여 명이 거주했다고 한다.³⁴⁾

태종 때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인구 유출은 중종 때가 되면 제주도의 고을이 빌 지경이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다.³⁵⁾ 이렇게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자 조선정부의 입장에서 대규모 유민 발생은 큰 부담이 되었다. 제주도에서 거두는 세금이 줄어들고 남아 있는 사람

27) 『太祖實錄』 권5, 태조 3년 3월 27일 병인

28) 『世宗實錄』 권36, 세종 9년 6월 10일 정묘

29) 김동진,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1991, 60쪽.

30)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9쪽.

31) 위의 논문, 37쪽.

32) 『太宗實錄』 권34, 태종 17년 7월 8일 신유

33) 『世宗實錄』 권53, 세종 13년 7월 7일 기사 ; 『成宗實錄』 권83, 성종 8년 10월 15일 기유 ; 『成宗實錄』 권85, 성종 8년 10월 25일 기미

34) 『中宗實錄』 권11, 중종 5년 6월 25일 기유

35) 『中宗實錄』 권92, 중종 35년 1월 10일 계묘

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주유민들이 늘어나자 조선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유민들에 대한 대책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성종 시기이다. 성종 초기 제주유민에 대한 대책은 크게 2가지였다. 첫 번째가 강경책으로 추쇄(推刷)하여 쇠환(刷還)시키는 것이었다.³⁶⁾ 두 번째는 온건책으로 두모악이 정착한 지역의 수령으로 하여금 이들을 구휼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³⁷⁾ 성종은 제주도의 수령에게 책임을 물으며 지방관은 유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관찰사로 하여금 제주유민들을 제주도로 돌려보낼 것을 명령했다.³⁸⁾

이에 반해 신하들은 이미 제주유민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채취하는 해물이 진상품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³⁹⁾ 때문에 이들을 돌려보내기보다는 정착한 지역의 수령으로 하여금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을 제시했다. 필요하면 배를 타고 이주할 능력이 있는 제주유민을 현실적으로 쇠환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물론 신하들 역시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으로 하여금 정착한 제주유민의 명단을 만들어 더 이상의 유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이미 정착한 제주유민들을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⁴⁰⁾ 동시에 제주유민들의 능력을 살려 수군으로 이용하는 것 역시 고려하고 있었다.⁴¹⁾

이후 중종 때의 기록에 따르면 수영에 소속된 제주유민들이 배를 다루는 핵심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논의는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제주유민의 발생 역시 여전히 제주도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쇠환 역시 계속되었다.⁴²⁾ 이는 성종 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유민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고 이탈한 제주유민들은 해안가에 정착해서 사실상 국가의 역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정부의 대책도 “특산물 부과의 과다와 특산물 생산을 위한 역의 과다”라는 근본적인 모순 해결이 없는 미봉책이었기에 출륙 유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1629년(인조 7년)에 비변사에서 제주의 군역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제주도민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하는 강경책을 시행했다.⁴³⁾ 이후 조선왕조실록에 제주도를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대규모로는 출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제주유민의 육지 연안 정착과 ‘두모악’의 발생

섬을 떠난 제주유민들은 두모악이 되었다.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 없이 가족들과 바다를 떠돌아다니며 물고기 잡이를 했다. 고정된 거처 없이 우거(寓居), 즉 임시 거주했다고 한다. 그러다가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도망치고 흩어져 거취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었다.⁴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두모악들이 거주했던 지역을 알려주는 기사는 총 29개다.⁴⁵⁾ 세부적인 지명이 나온 경우도 있고, 해당 도(道)만 표기된 경우도 있다. 세부 지

36) 『成宗實錄』 권28, 성종 4년 3월 28일 무오 ; 『成宗實錄』 권85, 성종 8년 10월 15일 기유

37) 『成宗實錄』 권85, 성종 8년 10월 16일 경술 ; 『成宗實錄』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

38) 『成宗實錄』 권145, 성종 13년 윤8월 12일 무인

39) 『成宗實錄』 권227, 성종 20년 4월 21일 기유

40) 『成宗實錄』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사

41) 『成宗實錄』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

42) 『中宗實錄』 권87, 중종 33년 2월 11일 을묘

43) 『仁祖實錄』 권21, 인조 7년 8월 13일 을축

44) 『成宗實錄』 권197,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

명을 보면 중국의 해랑도, 황해도, 해주, 용진, 충청도의 가외덕도, 전라도의 흥양(현 고흥), 낙안, 흥덕(현 고창), 추자도, 보길도, 강진 남당포, 경상도의 사천, 고성, 진주, 동래, 부산, 곤양, 마산, 김해 도요저리 등이 있다. 도(道) 단위 지역별 빈도수는 중국 해랑도 2회, 황해도 5회, 충청도 3회, 전라도 8회, 경상도 11회, 강원도 1회이다. 경상도, 전라도 등 남해안이 도합 19회로 가장 많이 나온다.⁴⁶⁾

제주도를 떠난 두모약들의 유랑하고 우거하는 지역이 주로 남해안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리 상 가장 가까운 거리라는 요소가 작용했을 것이다. 남해안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서해안의 황해도, 충청도의 횡수도 적지 않다. 합쳐서 8회의 기록이 등장한다. 반면 동해안 강원도의 경우는 단지 1회뿐이다. 이는 제주유민이 동해안 쪽보다는 남·서해안을 향했음을 말해준다. 동해안의 단조로운 해안지형보다는 남·서해안의 복잡한 해안지형이 유랑민들의 유랑하고 우거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랑은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은신하기에 유리한 지형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산물 채취의 용이성에서도 동해안보다 남·서해안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⁴⁷⁾

이처럼 두모약들은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의 연안 지역에 정착했다는 점에서 울산 역시 그 중 한 지역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부산과 동래까지 두모약이 거주한 것을 감안하면 울산 역시 조선 전기에도 두모약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울산의 두모약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두모약은 의복이 달랐을 뿐 아니라 언어 또한 이질적이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쉽게 동화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⁸⁾ 그러나 두모약들은 자신들의 특기를 살려 크게 두 부류의 집단으로 정착해 갔다. 첫 번째는 해당 지역에서 진상을 위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역을 맡은 포작(鮑作)으로서 정착하여 살아갔던 부류였다. 두 번째는 제주도민들이 지니고 있었던 뛰어난 선조술(船組術)과 항해술(航海術)을 인정받아 수군(水軍)으로 편입된 부류였다.⁴⁹⁾

기록에 따르면 제주유민인 두모약들을 포작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⁵⁰⁾ 해산물을 채취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포작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들의 생업을 보여준다. 기록은 이들이 바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준다. 포작들은 바다의 산물을 활용했다. 조어(釣魚)와 채곽(採藿), 즉 물고기 잡기와 미역 채취가 주된 생업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다시 말해 식량과 교환해서 먹고살았다고 한다. 이들의 생업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두모약(頭無岳) 등은 본래 낚시질로 생리(生利)를 삼는다.’ 혹은 ‘두모약(頭無岳) 【곤잠수하는 사람.】 은 해채(海採)로 업을 삼는다.’라는 구절이 등장해 위에서 말한 생업과 다르지 않다.⁵¹⁾

이러한 생업 방식이 조선의 유교 지식인들의 눈에는 비정상인 것으로 비쳤다. 그들은 해산물 채취와 교역을 하는 제주유민들을 ‘이 무리들은 본래 항산(恒産)이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라고 기록했다.⁵²⁾ 농업을 본(本)으로, 상업을 말(末)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거친 바다 생활을 하며 해산물을 채취하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사는 제주유민은 항산이 없는 비

45) 본래는 27개 기사이지만 한 기사 안에 두 개 이상의 지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46) 이영권, 「15~17세기 제주유민의 사회사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88쪽.

47) 위의 논문, 89쪽.

48) 『成宗實錄』 권83, 성종 8년 8월 기해

49)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8쪽.

50) 『成宗實錄』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1일 신묘 ; 『成宗實錄』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

51) 『成宗實錄』 권197, 성종 17년 11월 22일 계해 ; 『中宗實錄』 권11, 중종 5년 6월 25일 기유

52) 『成宗實錄』 권198,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

정상인 존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채취한 해산물은 곧바로 교역물이 되었다.⁵³⁾ 초기의 두모악들은 바닷가에 정착하고 거주하면서 해산물을 채취했던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처 없이 배 위에서 생활했다는 기록이 나온다.⁵⁴⁾ 또한 ‘두무악(頭無岳) 등은 본래 낚시질로 생리(生利)를 삼고 배를 집으로 삼아 정해 사는 곳이 없다.’라거나 ‘두무악(頭無岳) 【곧 잠수하는 사람.】은 해채(海採)로 업을 삼아 배에 처자를 싣고 창해(滄海)로 집을 삼는다.’라는 기록도 나온다.⁵⁵⁾ 즉 이들의 생활은 기본으로 정착이 아니라 배 위에서의 유랑이었다는 말이 된다.

물론 두모악들이 한없이 떠돌이 생활만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수령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들을 활용하곤 했다. 지방 수령들은 두모악들이 가진 해산물 채취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이들로부터 각종 조세와 역을 거두어들였다. 두모악들은 원칙상 제주도로 돌아가야 했지만 지방 수령의 묵인과 조선정부의 온건책을 통해 떠돌이 생활을 정리하고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국가가 필요한 역을 지며 살아가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두모악들이 진상을 위한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해당 고을의 수령이 두모악들을 이롭게 여기고 그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⁵⁶⁾ 조선정부에서도 차라리 소재지의 호에 편입시켜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며 그들로부터 오히려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⁵⁷⁾ 고을 수령들이 두모악들에게 의뢰해 해산물을 채취하여 조선정부에 진상을 납부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지방 수령들이 오히려 돌려보낼 마음이 없었다.⁵⁸⁾

전라도와 경상도 각 지방의 수령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모악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 정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면 그들로부터 각종 조세를 거두어들일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어류는 물론 각종 어패류를 잠수하여 채취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하면 많은 양의 해산물을 얻을 수 있어 수령들은 오히려 그 지역에 머물기를 바라기까지 했다.⁵⁹⁾ 물살이 비교적 격한 전라도, 경상도 해안에서도 두모악들이 지닌 잠수 실력은 바다 속 해산물 채취 작업을 더욱 순조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수령들은 그들을 돌려보낼 마음이 더더욱 없었던 것이다.⁶⁰⁾

뿐만 아니라 지역 수군 책임자들은 이들을 수군으로 등록하여 배를 조종하는 일 등의 수군의 몫을 맡기고자 했다. 두모악들이 수군에 편입되어 그들의 능력을 발휘했던 기록들은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에 나타난다. 두모악들이 사용하는 배는 튼튼할 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가벼우며 빨라서 왜적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각 포구의 병선 역시 이와 같이 제작해야함을 조언했다.⁶¹⁾ 이미 두모악들은 배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바다를 방어하는 군사로 활용하자는 건의도 했다.⁶²⁾ 두모악들이 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니 곤양, 사천 등 해안지방에 분산하여 배치시켜 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들을 투입하자는 것이었다.⁶³⁾

53) 『成宗實錄』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1일 신묘 ; 『中宗實錄』 권45, 중종 17년 6월 26일 신축

54) 『成宗實錄』 권197, 성종 17년 11월 22일 계해 ; 『成宗實錄』 권177, 성종 16년 4월 12일 계해

55) 『成宗實錄』 권197, 성종 17년 11월 22일 계해 ; 『中宗實錄』 권11, 중종 5년 6월 25일 기유

56) 『成宗實錄』 권85, 성종 8년 10월 25일 기미

57) 『成宗實錄』 권227, 성종 20년 4월 기유

58) 『成宗實錄』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1일 신묘 ; 『成宗實錄』 권226, 성종 20년 3월 15일 계유 ;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9~40쪽.

59)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제2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5, 59쪽.

60)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濟州島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9, 123쪽.

61) 『成宗實錄』 권85, 성종 8년 10월 16일 경술

62) 『中宗實錄』 권14, 중종 6년 10월 2일 기묘

성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히 신하들의 의견에 불과했고 성종 역시 관찰사와 해당 관청에게 논의하도록 지시했을 뿐이다. 성종 시기의 두모약 대책이 적극적인 활용보다는 해당 지역의 수령으로 하여금 두모약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고 흩어지지 않게 보살피는 소극적 온건책에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적 활용이 이루어졌다. 『중종실록』의 기사를 살펴보면 이미 수영에 수군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제주 유민들에 관해서 언급했다.⁶⁴⁾ 기록에 따르면 ‘수군절도사 유홍(柳泓)이 저들이 모두 본도에서 쇠환되면 배를 부릴 사람이 없게 된다.’고 강력히 항의했던 기록이 확인된다.⁶⁵⁾ 적어도 1538년(중종 33년) 시점에서는 두모약들 중 일부가 수영에 소속되어 배를 다루는 핵심적인 위치에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제주유민, 즉 두모약들의 생활이 선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감안하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사정을 감안하면 두모약들이 가지는 군사적 가치는 더더욱 높았다. 수군은 1년에 6개월이라는 고된 근무환경과 식량, 무기, 군복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 등에 시달렸다. 더군다나 선박, 소금, 진상 등을 위한 노역까지 겹치면서 대립(代立)이나 방군수포(放軍收布) 등으로 점차 군역을 기피하게 되었고 천인이나 죄인 등을 수군으로 충원하면서 수군은 천역으로 여겨졌다.⁶⁶⁾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수군을 명예직으로 수여하여 요역을 면제하고 여러 혜택을 배려했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수군에 충원되는 것을 기피했다. 결국 성종 시기에 이르러 수군의 역을 세습하게 하여 일정한 군사 수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역의 세습은 수군의 천역화를 가속화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칠반천역의 하나로 간주되었다.⁶⁷⁾

이순신(李舜臣) 역시 장계에서도 ‘이름만 군적에 올랐을 뿐이지 그중에는 잡동사니가 절반이나 되어 그 실제의 수는 아주 적습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수군의 실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⁶⁸⁾ 『선조실록』에서도 ‘전선(戰船)은 포작한(鮑作干)이 없으면 운행할 수가 없다.’라든가 ‘육지에 있는 수군은 배 다루는 것을 몰라 번(番)이 되면 목포(木布)를 마련하여 해변에서 포작인(鮑作人)을 고용해서 대립(代立)시킨다.’라는 기록이 나온다.⁶⁹⁾

두모약들의 수군으로서의 능력은 임진왜란 때 여실히 드러났다.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이 처음 출전할 때 포작선(鮑作船) 46척이 동원되었다.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은 경상도의 물길을 알지 못했고 경상우수사였던 원균은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다와 뱃일에 익숙한 두모약들을 동원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성조실록』의 기록에도 남녀 두모약 무리들을 모아놓고 술까지 대접하며 물길 정보를 물어봤다는 기록이 있다.⁷⁰⁾

수전(水戰)에서도 두모약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이미 중종 때 성을 쌓고 방어할 뿐, 배를 타고 방어하는 제도는 폐기되었다는 기록이 나온다.⁷¹⁾ 임진왜란 당시 배를 몰아 직접 싸우는 일은 두모약이 주축이었다는 것을 가능성이 크다. 이순신의 장계에서도 두모약들이 배를 잘 다룰 뿐 아니라 활을 잘 쏘았다고 기록되었다.⁷²⁾

63) 『成宗實錄』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 ; 『成宗實錄』 권197, 성종 17년 11월 22일 계해

64) 『中宗實錄』 권87, 중종 33년 2월 11일 을묘

65) 『中宗實錄』 권92, 중종 35년 1월 10일 계묘

66) 이영권, 「15~17세기 제주유민의 사회사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27쪽.

67) 이재룡, 「朝鮮前期의 水軍 -軍役關係를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제5호, 1970, 133쪽.

68) “名雖載籍，雜項居半，其實鮮少。” (『李忠武公全書』 「請沿海軍兵糧器全屬舟師狀」 선조 26년 윤 11월 17일 정유)

69) 『宣祖實錄』 권121, 선조 33년 1월 4일 기유 ; 『宣祖實錄』 권136, 선조 34년 4월 1일 무진

70) 『成宗實錄』 권197, 성종 17년 11월 22일 계해

71) 『中宗實錄』 권99, 중종 37년 8월 15일 임진

또한 장계에는 전사자나 부상자를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상자의 직역과 이름을 통해 대략적인 신상을 알 수 있다. 「당포과왜병장」과 「견내량과왜병장」, 「부산과왜병장」, 이상 3개의 장계에 적힌 사상자들 중 대략 10% 내외가 두모약이었다.⁷³⁾

3. 울산지역 '두모약'의 구성과 변화

1) 17세기 『울산부호적대장』의 '두모약'

17세기 초반의 울산은 두모약들이 정착할 만한 여러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1631년(인조 9년) 당시 울산도호부사였던 박명부(朴明溥)가 올린 상소인 「울산민폐소」에 울산의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

임진년의 변에 가등청정(加藤清正) 군의 소굴이 되어 병화를 가장 참혹하게 입으니 군사와 백성이 쓰러지고 외롭게 되었습니다. 다만 토지가 조금 기름지고 물고기와 소금이 산출되어 옮겨오는 무리가 응모하여 즐겁게 거주하니 황폐한 토지가 점차 개간되고 고을의 모양이 대략 이루어졌습니다.⁷⁴⁾

위의 기록에서처럼 울산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점령지로서 울산성 전투와 같은 큰 전투도 일어난 지역이었다.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컸고 울산의 해부(海夫)들 역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울산은 해안을 접한 지역으로 조선 초기부터 해산물을 공납 및 지상으로 바친 지역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미역, 세모(細毛), 김(海衣), 청각(靑角), 전복(全鮑), 건합(乾蛤), 홍어(洪魚) 등과 같은 여러 해산물을 토공(土貢)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두모약과 같이 해산물들을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실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울산에서는 단순히 이주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했을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실제로도 많은 인원들이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주한 인원 중에는 두모약 역시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울산부호적대장』에는 6개 식년에 걸쳐 두모약이 기록되었다.⁷⁵⁾

72) “壯健能射慣熟舟楫士兵鮑作之輩”(『李忠武公全書』「陳倭情狀」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73) 이영권, 「15~17세기 제주유민의 사회사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36쪽.

74) 이종서, 「박명부(朴明溥)의 ‘울산민폐소(蔚山民弊疏)’」 『울산사학』, 제14집, 2009, 222쪽.

75) 『울산부호적대장』에서 두모약이 기재된 식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식년	서명(書名)	두모약 기재 면리(面里)		비고
1609년	광해일년기유울산호적대장 (光海一年己酉蔚山戶籍大帳)	남면 (南面)	대대여리(大代如里)	지역 불명인 4호 포함.
			온양리(溫陽里)	
1672년	울산호적대장 (蔚山戶籍大帳)	부내면 (府內面)	백련암리 (白蓮巖里)	끝 부분에 별도 기재.
1684년	숙종십년갑자울산호적대장 (肅宗十年甲子蔚山戶籍大帳)	부내면 (府內面)	성황당리 (城隍堂里)	
1705년	숙종삼십일년을유울산호적대장 (肅宗三十一年乙酉蔚山戶籍大帳)	부내면 (府內面)	성황리 (城隍里)	
1708년	숙종삼십사년무자울산호적대장 (肅宗三十四年戊子蔚山戶籍大帳)	부내면 (府內面)	성황당리 (城隍堂里)	
1720년	숙종사십육년경자울산호적대장 (肅宗四十六年庚子蔚山戶籍大帳)	대현면 (大峴面)	외성황당리 (外城隍堂里)	단, 1호만 기재

호적대장(戶籍臺帳)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호구(戶口)를 파악하여 기록한 문서이다.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의 지방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갑자(甲子)로부터 3년마다 지지(地支)의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뒤에 붙는 해에 작성되었다.⁷⁶⁾ 호적은 일정한 기재양식을 가진다. 먼저 호주(戶主)의 이름과 신분 및 직역(職役)과 나이 및 간지, 본관(本貫)을 먼저 기재했다. 이어서 호주의 사조(四祖) 즉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정보를 기재했다. 그리고 호주의 처(妻) 또한 똑같이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정보들을 통해 두모약들의 신분과 직역의 변화는 물론 사조 정보를 통한 두모약 가계(家系)의 흐름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처(妻)의 가계 정보를 분석해 혼인관계까지 알 수 있다.

<표-2> 1609년 두모약 호구 수

구분		리(里) 총 호구	두모약 호구	리(里) 총 호구 중 두모약 호구 비율(%)	합계 두모약 호구 중 두모약 호구 비율(%)
불명	불명	호戶	4***	5	25
		구口	28	10.5	31.5
남면 南面	대대여리 大代如里*	호戶	3****	2.6	18.75
		구口	13	3.8	14.5
	온양리 溫陽里**	호戶	9	2.4	56.25
		구口	48	4.4	54
합계	호戶	570	16	2.8	100
	구口	1687	89	5.3	100

* 남면 대대여리는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의 동부 일원.

** 남면 온양리는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일원.

*** 주호가 훼손된 호 포함.

**** 주호의 직역이 겸사복(兼司僕)인 호 포함.

『울산부호적대장』에 두모약들이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1609년(광해 1년)이다. 1609년 호적은 현존하는 『울산부호적대장』 중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하다. <표-2>는 1609년에 기재된 두모약들을 정리한 것이다. 확인되는 두모약들은 모두 남면에서 거주했다. 숫자는 16개 호(戶)이며, 이 중 거주지를 알 수 있는 호는 12호다. 거주지는 대대여리와 온양리이다.

<표-3> 1609년 두모약의 호적 기재 양식

식년	1609년		
	불명	남면 대대여리 (南面 大代如里)	남면 온양리 (南面 溫陽里)*
호(戶)	신호(新戶)	신호(新戶)	호(戶)
호주(戶主)	두모약 김삼동 (豆毛岳 金三同)	두모약 김분손 (豆毛岳 金粉孫)	두모약 개련 (豆毛岳 介連)

76)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7, 39쪽.

호주정보	나이(年)	57세	46세	52세
	간지(干支)	갑진(甲辰)	갑자(甲子)	무오(戊午)
	본관(本貫)	울산(蔚山)	울산(蔚山)	웅천(熊川)
호주사조정보	부(父)	두모악 고음동 (豆毛岳 古音同)	두모악 좌산 (豆毛岳 左山)	두모악 명동 (豆毛岳 命同)
	조(祖)	두모악 내은이 (豆毛岳 內隱伊)	진석(進石)	모 두모악 덕춘 (母 豆毛岳 德春)*
	증조(曾祖)	불명	불명	
	외조(外祖)	두모악 김이금 (豆毛岳 金邇金)	두모악 조금 (豆毛岳 趙金)	
	외조 본관 (外祖 本貫)	울산(蔚山)	불명	
처(妻)		두모악 진금 (豆毛岳 眞今)	두모악 내은덕 (豆毛岳 內隱德)	두모악 추득 (豆毛岳 秋得)
처정보	나이(年)	53세	47세	48세
	간지(干支)	정사(丁巳)	계해(癸亥)	임술(壬戌)
	본관(本貫)	울산(蔚山)	불명	웅천(熊川)
처사조정보	부(父)	두모악 고음손 (豆毛岳 古音孫)	두모악 내은동 (豆毛岳 內隱同)	두모악 동 (豆毛岳 同)
	조(祖)	두모악 남손 (豆毛岳 南孫)	언손(彦孫)	모 두모악 소사 (母 豆毛岳 召史)**
	증조(曾祖)	불명	불명	
	외조(外祖)	두모악 김이금 (豆毛岳 金邇金)	두모악 김두지 (豆毛岳 金豆之)	
	외조 본관 (外祖 本貫)	울산蔚山	불명	
자녀(子女)		막덕(莫德)	분개(粉介)	불명
* 남편 온양리의 두모악들은 사조(四祖)가 아닌 부(父)와 모(母)를 기재. ** 소사(召史)는 양민(良民)의 아내를 일컫는 일반명사.				

그리고 숫자는 적지만 기재 양식에서 중요한 정보를 보여준다. <표-3>은 1609년의 두모악들 중 불명을 포함해 지역별로 1명씩 선정하여 기재 양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3>의 음영 처리는 직역 부분에 두모악이 표기된 인원을 표시한 것이다. 호주는 물론 호주의 조상들이 대부분 두모악으로 표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호주의 아내와 그 조상들까지도 대부분 두모악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여성은 보통 직역을 부담하지 않았다. 여성의 직역 부분에는 과녀(寡女), 노비(奴婢)와 같이 현 상태나 신분이 기재되었다. 처와 그 조상들까지 두모악이라 표기한 것은 두모악이 단순히 직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울산민과 구분되는 별도의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7세기 초에 두모악은 출신에 근거한 집단을 뜻하는 것에 가까웠다고 추정된다.

이미 두모악은 발생 초기부터 이질성(異質性)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종실록』에는 ‘의복은 왜인과 같으나, 언어는 왜말도 아니고 한어(漢語)도 아니다.’라고 기록했다.⁷⁷⁾ 심지어

140년 후인 1749년의 울산의 읍지(邑誌)인 『학성지』에도 ‘풍속과 형상이 다른 해부들과 같지 않아서 두발이 모두 붉다.’라고 기록되었다.⁷⁸⁾

1609년에서 63년이 지난 1672년의 호적을 살펴보면 호주는 물론 사조(四祖)와 처, 그리고 처의 사조(四祖)에 대해서도 두모약을 표기하던 것과 달리 단지 호주에게만 두모약을 표기하고 있다. 또한 남면의 온양리와 대대여리 등에 거주하던 두모약은 부내면의 백련암리(白蓮巖里) 한 곳에서만 거주하고 있다. 백련암리의 기재가 끝나는 부분에 리명(里名)을 쓸 자리에 ‘頭毛惡’을 써서 따로 모아 기재하고 있다. 두모약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한 것과 별도로 기재된 것은 이들이 자연적으로 모여 산 것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백련암리에 편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4> 1672년 두모약 호구 수

구분		리(里) 총 호구	두모약 호구	리(里) 총 호구 중 두모약 호구 비율(%)
부내면 府內面	부내면 백련암리 府內面 白蓮巖里*	호戶 352	187**	53
	구口	1262	157	12.4

* 부내면 백련암리는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일원.
** 대처(代妻) 및 대자(代子) 호(戶) 포함.

<표-4>는 1672년에 기재된 두모약들을 정리한 것이다. 두모약의 호수는 총 187호로 1609년에 비해 약 12배 증가했다. 1609년 호적의 훼손으로 인한 기록 상실을 감안하더라도 자연적인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1672년 두모약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1609년의 호적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1609년과 1672년의 두모약 사이에 서로 이어지는 가계는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1672년의 두모약 187호는 단순히 자연 증가만이 아닌 1609년 이후에 울산에 정착한 제주유민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주유민들의 유입은 1629년에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1629년(인조 7년)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제주(濟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流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소되자, 비국이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라는 기록이 나온다.⁷⁹⁾

반대로 말하면 임진왜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이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도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조선정부와 토호의 이중 수탈이라는 구조가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호적의 기록에 따르면 1629년 이후에도 제주도민들의 유입은 계속되었지만 초기와 비교하면 그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추정된다.

77) 『成宗實錄』 권83, 성종 8년 8월 5일 기해

78) “風俗形狀，與他海夫不同，頭髮皆赤。” (『鶴城誌』古蹟)

79) 『仁祖實錄』 권21, 인조 7년 8월 13일 을축

<표-5> 『울산부호적대장』에 나타난 두모약 ‘신호’ 분석 (단위 : 호)

구분 \ 년도	년도				
	1609년	1672년	1684년	1705년	1708년
두모약 중 신호(新戶)	7*	0	2	10	15
신호 중 분가호(分家戶)	불명	0	0	3	4
신호 중 불명호(不明戶)	불명	0	2	7	11

* 직역이 겸사복(兼司僕)인 주호 포함.

<표-5>는 각 식년의 두모약 중 ‘신호(新戶)’로 기재된 호를 정리해서 표로 만든 것이다. 신호의 가계를 분석해서 신호의 조상이 호적에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분가호와 불명호로 구분했다. 신호의 조상이 호적에 기록되었다면 분가호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해당 식년 이전의 호적에서 조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명호는 이주한 호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1672년도의 두모약들은 1609년과 1629년 사이 울산에 정착한 제주유민들도 다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당시 상황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울산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점령지로서 울산성 전투와 같이 대규모 공성전까지 벌어진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 때문에 울산의 지방관청에서는 제주도에서 출륙하는 두모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울산의 인구와 수입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었다.

앞의 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지방 수령의 입장에서는 두모약들의 유입은 큰 이익이 되므로 이들을 제주로 다시 돌려보내기보다는 정착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울산의 전쟁피해가 극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돌려보내지 않고 정착시키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두모약들을 유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성지』에서도 ‘일찍이 조정에 채복하여 진상하기 위해 제주(濟州)의 해민(海民) 약간 호(戶)를 옮겨 왔다고 전해온다.’라고 기록된 것 역시 울산에서 적극적으로 두모약들을 유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⁸⁰⁾

<표-6> 1684년 두모약 호구 수

구분		리(里) 총 호구	두모약 호구	리(里) 총 호구 중 두모약 호구 비율(%)	
부내면 府內面	부내면 성황당리 府內面 城隍堂里*	호戶	265	187**	70.57
	구口	791	165	20.9	

* 부내면 성황당리는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일원.
** 대처(代妻) 및 대자(代子) 호(戶) 포함.

80) “世傳曾前，朝家爲採卜進上，移來濟州海民略干戶。”(『鶴城誌』古蹟)

<표-6>은 1684년의 두모약을 정리한 표이다. 1672년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 1672년 처럼 호의 모든 인원에게 붙던 두모약이라는 명칭이 호주에게만 표기되었다. 그리고 백련암리에서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두모약이 신설된 성황당리(城隍堂里)에 별도로 편제되었음이 확인된다. 남면에 흩어져 있던 두모약을 부내면의 백련암리에 거주시켰다가 성황당리를 신설하여 별도로 편제한 것이다. 두모약들이 거주한 곳들은 모두 해안이나 강을 접해 바다로 나가기 쉬운 지역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호의 구성원 대부분에게 붙던 두모약이라는 명칭이 호주에게만 붙기 시작한 것은 두모약이 집단에서 직역에 가까운 의미로 변해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한 것 역시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일정한 역을 부과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17세기 초에는 울산민과 구별되는 집단을 뜻하던 두모약이 17세기 말에는 국가가 부여하는 직역이라는 의미 역시 가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처의 배경으로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당시 숙종이 전복 진상을 명령했던 데 있다. 1678년에 경상도에 대동법이 시행되었지만 진상이 아닌 공납이 전세에 통합된 것이며 두 자전(慈殿)에 대한 물선(物膳)의 진상은 폐지하지 않았다. 울산의 토공에는 전복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1년 후인 1679년에는 경상 통영과 좌병영에 생복(生鰯)과 숙복(熟鰯)을 진상하도록 명령했다.⁸¹⁾ 이미 울산은 전복과 같은 여러 해산물을 토공으로 바치고 있는 와중에 별도의 부담이 더해졌던 것이다. 결국 경상좌병영에서는 중앙에 상납할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 두모약들이 필요했다.

두 번째로는, 두모약이 점점 해체될 조짐을 보인 점이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두모약이라는 명칭이 호주에게만 표기되기 시작한다. 두모약에 대한 관리방식이 부류에 따른 집단관리에서 역의 부과를 통한 개별 관리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 추정된다. 관리방식의 변화는 두모약이라는 집단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표-7> 『울산부호적대장』 두모약 가계 간 혼인 비교

구분 년도	지역	두모약 호수(戶數)	두모약 가계 간 혼인 건수(件數)	두모약 가계 간 혼인 비율(%)
1609년	불명	4	2	50
	남면 대대여리 (南面 大代如里)	3	2	66.7
	남면 온양리 (南面 溫陽里)	9	7	77.8
1672년	부내면 백련암리 (府內面 白蓮巖里)	187	55	30
1684년	부내면 성황당리 (府內面 城隍堂里)	187	10	5.3
1705년	부내면 성황리 (府內面 城隍里)	190	16	8.4
1708년	부내면 성황당리 (府內面 城隍堂里)	182	9	5

81) 『承政院日記』 271책, 숙종 5년 7월 27일 기미

<표-7>은 전체 두모약 중 두모약 가게끼리의 혼인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1609년은 여성에게도 두모약이 표기되었지만 1672년부터는 호주에게만 두모약이 표기된다. 따라서 두모약 호주의 사조(四祖) 정보와 두모약 처(妻)의 사조 정보를 대조하여 일치하면 ‘두모약 가게 간 혼인’으로 정리했다. 1609년은 여성에게도 두모약을 표기했기 때문에 ‘두모약 가게 간 혼인’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 불명의 두모약 4호 중 2호(50%)가 두모약끼리 혼인했고 대대여리의 두모약 3호 중 2호(66.7%)가 두모약끼리 혼인했으며 온양리의 두모약 역시 9호 중 7호(77.8%)가 두모약 사이의 혼인이다. 1672년에는 이전 식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지만 30%의 비율을 보여준다. 그런데 12년 후인 1684년이 되면 두모약 가게 간의 혼인 비율은 5.3%로 급격히 떨어진다. 이후 식년인 1705년에 잠깐 오르는 하지만 1684년 이후로는 두모약 간의 혼인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이 확인된다.

두모약 가게 간 혼인율의 감소는 두모약 집단이 해체될 조짐을 보였음을 알려준다. 두모약들이 제주에서의 수탈을 피해 울산으로 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같은 고향에서 온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다. 이들은 울산민들과 문화적으로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청에서는 두모약들의 거주지를 통제하여 진상을 위한 수취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다. 이처럼 관청과 두모약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두모약들은 관청에서 거주지를 통제하는 것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세대가 교체되면서 두모약들과 울산민 사이의 이질성이 해소되었으며 이는 혼인율로도 확인된다. 이전에는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 유지되던 두모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모약들은 울산민에 동화되어갔을 것이라 추정된다.

2) 18세기 ‘두모약’의 해체와 그 원인

앞에서 설명한 ‘두모약 가게 간의 혼인’의 감소는 두모약이 울산민에 동화되어 갔다는 것을 뜻하며 결국 두모약 해체의 조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해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두모약들이 맡은 직역, 즉 잠수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 자체가 힘들고 위험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전복을 따는 것은 미역을 채취하는 것에 비하여 매우 어렵고 고되어, (중략) 갯가에 도착하면 추위에 얼어서 오돌오돌 떨어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6월이라도 또한 그렇습니다. (중략) 무릇 전복 하나를 따러다가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물밑의 돌은 간혹 모질고 날카로워서 접촉하였다가 죽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벌레와 뱀 같은 악한 동물에게 물려서 죽는 경우도 봅니다.⁸²⁾

위의 기록은 1710년에 쓰인 김춘택(金春澤)의 문집인 『북헌거사집』의 「잠녀설」 중 일부로 김춘택이 1706년에 제주도로 유배를 가서 잠녀(潛女)에게 물질의 고됨과 위험을 자세히 물어보고 들은 답을 기록한 것이다.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 전복을 채취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울산지역 해부(海夫)들이 과중한 역에 시달렸다는 점이다. 「울산민폐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나온다.

82) “然採鰓比採藿甚難而苦 (중략) 浦邊則寒凍戰慄不可堪雖六月 (중략) 凡採一鰓其幾死者多且水底之石或廉利觸之則死其虫蛇惡物噬之則事” (『北軒居士集』 「潛女說」)

① 병인년(1626년, 인조 4년)에 군적을 작성할 때 부사 민여겸이 오직 봉공(奉公)을 급하게 여기고 뒷날의 근심을 생각하지 않아 군사와 보인(保人)을 충원함에 수효를 많게 하는 데 힘써 심지어 사천(私賤)이나 향화(向化)한 해부(海夫)까지 규정을 살피지 않고 다 군안에 편적했으니 그 사이에 잘못된 것이 하나 뿐이 아니었습니다.⁸³⁾

② 배 하나를 만드는데 정부(丁夫)의 역과 식량을 빌리고 철을 장치하는 비용이 극히 많아서 50칸의 기와집을 짓는 공력과 맞먹습니다. 해부(海夫)가 늘 입에 담는 것과, 읍민 역역(力役)의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이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봄가을 훈련[水操]할 때에 본래 항정(恒定)한 노 젓는 병사가 없으므로 관의 노예를 나누어 선발하고 해부(海夫)를 수색해 잡는데 그 처를 가두어 묶어 놓고 배에 오르도록 협박해야 이내 뜻을 올릴 수 있으나 매번 기한에 늦는 율(律)을 범합니다. 평일에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완급에 유용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⁸⁴⁾

①은 「울산민폐소」의 기록 중 ‘군오(軍伍)의 폐단’의 일부로 호적이 없는 해부들까지 동원해 병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②는 ‘전선(戰船)의 폐단’의 일부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울산 지역의 해부들이 과중한 역으로 인해 상당한 고충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에서는 두모약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해부라는 범주에 두모약 역시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두모약들은 과중한 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울산민에 동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두모약이 남정에게만 부여된 것은 두모약들이 울산민과 동화되면서 특정 부류를 집단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이 힘들어지자 울산민처럼 개별 인원에 대해 역을 부과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17세기 후반은 두모약이 출신에 근거한 집단보다는 좀 더 직역에 가까워진 시기로 추정된다. 두모약이 호주에게만 표시된 것은 보통의 울산민들처럼 일정한 역을 부여받는 형태로 보여진다. 하지만 “두모약의 울산민에 동화”는 궁극적으로 전복을 채취할 수 있는 인원의 감소를 초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모약들이 울산민들처럼 역을 부여받았음에도 한 곳에 집중적으로 거주한 것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두모약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수취를 쉽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는 두모약이라는 부류를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울산민처럼 역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 사이의 과도기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18세기 초인 1705년에 이르면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1684년까지만 해도 두모약은 신분이 양인인지 천인인지 정도만 알 수 있었다. 그런데 1705년부터 두모약들에게 일반적인 직역들이 표기되기 시작한다. 직역들 중에서도 병영군과 부군이 많이 표기된다. 두모약에게 부여된 직역 가운데 능로군(能槽軍), 생물군(生物軍), 전선사공(戰船沙工) 등은 두모약의 출신과 관련지을 수 있다. 제주도 출신인 두모약은 배를 잘 다루었으며 채복(採鰯)에도 능숙했다. 이러한 능력은 연해 지역의 수령들이 두모약을 받아들인 중요한 요인이었다. 두모약을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양의 해산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수군에 편입시켜 바다를 방어하는 군사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705년을 보면 두모약이 능로군, 전선사공, 생물군의 직역을 지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두모약에게 부여되는 직역은 초기에 그들을 받아들였던 요인과는 무관하게 부과된 것이다. 두모약이 담당할 직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병영군(兵營軍)과 부군(府軍)이었다. 1705년 두모약의 54.9%가 1708년에는 64.1%가 병영군을 맡았다.

83) 이종서, 「박명부(朴明搏)의 ‘울산민폐소(蔚山民弊疏)’」 『울산사학』, 제14집, 2009, 222쪽.

84) 위의 논문, 225~226쪽.

부군 역시 1705년 전체 두모약 중 약 20%를 차지했으며 1708년 역시 약 16%의 두모약이 부군이였다. 두모약이 언제부터 병영군의 역을 부담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1684년~1705년 사이에 부내면을 기재한 호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8> 1705년과 1708년, 『울산부호적대장』의 두모약 직역 (단위 : 명)

구분		년도	
		1705년	1708년
병영 소속	병영군(兵營軍)	93	101
	병영군사노(兵營軍私奴)	14	17
부 소속	부(府)	0	1
	부군(府軍)	30	21
	부군사노(府軍私奴)	5	6
	부군시노(府軍寺奴)	2	2
	부능로군(府能櫓軍)	3	1
	부능로군사노(府能櫓軍私奴)	1	0
	부사노(府私奴)	1	0
	부서원군(府書院軍)	2	1
	부장방군(府將房軍)	1	1
	부전선사공(府戰船沙工)	3	2
	부침수군(府沈水軍)	2	3
	부향교군(府鄉校軍)	2	1
	부향소군(府鄉所軍)	2	1
순영 소속	순영군(巡營軍)	1	1
	순영모군(巡營募軍)	3	2
	순영모군사노(巡營募軍私奴)	1	0
	순영생물군(巡營生物軍)	3	2
기타	능로군사노(能櫓軍私奴)	1	1
기타	사공(沙工)	0	1
	사노(私奴)	2	1
	사노생물군(私奴生物軍)	1	0
	전선사공(戰船沙工)	3	4
	침수군(沈水軍)	1	0
	향교군(鄉校軍)	2	2
	향교군사노(鄉校軍私奴)	1	0
	향소군(鄉所軍)	2	2
	불명	13	10
합계		195	184

<표-8>은 1705년과 1708년에 두모약과 함께 표기된 직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병영군은 두모약 직역 가운데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병영군과 부군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울산이 세종 때부터 전복을 토공으로 바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울산부(蔚山府)가 두모약들을 부군이라는 직역으로 소속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계다

가 1679년(숙종 5년)에 경상좌병영에 전복을 진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병영 역시 두모약들에게 병영군이라는 직역을 부과한 것이다.

두모약들에게 직역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두모약들에 대한 관리 방식이 출신에 따른 부류별 관리에서 보통의 울산민들처럼 역의 부과를 통한 개별 관리 방식에 더욱 가까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제주 출신의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구분은 남아있지만 보통의 울산민들처럼 직역을 부여받은 것이다. 1609년에는 호주는 물론 호주의 조상과 처와 처의 조상들까지 두모약을 표기했지만 1672년부터는 호주에게만 표기했다. 18세기 초반에 병영군이나 부군 같은 직역을 부여된 것은 한층 더 울산민에 가까워진 단계로 생각된다.

『울산부호적대장』 중 부내면의 호적이 1708년에서 1765년 사이의 식년이 부재하는 관계로 1708년 이후, 두모약들의 행방은 확인하기 어렵다. 『울산부호적대장』에서 마지막으로 두모약이 등장하는 것은 1720년 대현면 외성황당리에서 단 1명뿐이다.⁸⁵⁾ 그러나 1749년에 기록된 울산의 읍지인 『학성지』에서는 성황당에 거주하는 두모약을 언급했다.

- ① 병영이나 고을에서 모두 사치스럽고 화려함에 힘쓴다. 성황당의 두모약은 더욱 사치스러움을 숭상하여 지금 역시 그러하다.⁸⁶⁾
- ② 두모약은 일찍이 저정에 채복하여 진상하기 위해 제주의 해민 약간 호를 옮겨 왔다고 전해온다. 그 자손들이 성황당에 살면서 채복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풍속과 형상이 다른 해부들과 같지 않아서 두발이 모두 붉다. 양녀는 흰 머리에 쪽을 짓고 사천은 머리카락을 띠어 두른다. 성품이 강직하고 속이지 않는다. 【제주의 한라산을 두모약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근본을 잊지 않고서 이와 같이 된 듯하다.】⁸⁷⁾

①과 ②는 모두 『학성지』의 기록으로, 각각 풍속(風俗)과 고적(古蹟)의 기록이다. ①의 기록에서 두모약들의 풍속이 당시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고 ②의 기록에서는 두모약들이 제주 출신인 것과 두모약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성황당에 거주하는 두모약이 언급된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1749년까지는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08년 다음 호적인 1765년 호적에는 두모약들이 기록되지 않았다.

특정 식년의 호적에서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후 식년의 호적에서 사조(四祖) 정보와 자녀 정보를 통해 이전 식년에서부터 이어지는 세대와 세대 사이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두모약은 이후 식년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나 전염병이 돌았다는 기록은 없다. 게다가 경상좌병영의 전복 공납 역시 계속되었다.⁸⁸⁾ 울산에서는 여전히 두모약들과 같이 물질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또한 1749년의 읍지인 『학성지』의 기록에서는 여전히 두모약이 울산에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호적 상에서 두모약이 사라진 이유는 조선정부의 양역 정책으로 인한 지방 병영의 군역 제한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오군영(五軍營) 체제로 군제를 개편했다. 하지만 오군영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종래의 오위(五衛)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85) “第三統統首金銀上 第一戶 頭毛岳金銀上年柒拾壹庚子本蔚山父銀卜祖自隱者未曾祖白中外祖良人尹福只本蔚山妻南士今年陸拾柒甲午本蔚山父白只祖白立曾祖戒還外祖良人得生本蔚山丁酉戶口相准” (『肅宗四十六年庚子蔚山戶籍大帳』大峴面 第二十二外城隍堂里)

86) “營中邑中, 務爲奢華, 城隍堂頭毛岳, 尤尙侈靡, 至今猶然。” (『鶴城誌』風俗)

87) “頭毛岳, 世傳曾前, 朝家爲採卜進上, 移來濟州海民略干戶, 其子孫在城隍堂, 以採卜爲業而風俗形狀, 與他海夫不同, 頭髮皆赤, 良女則白頭北髻, 私賤辮髮繞頭, 性强直不欺。【齊州漢拏山一名頭無岳, 似是不忘本, 及此若。】” (『鶴城誌』古蹟)

88) 성범중 외 6명, 『譯主 경상좌병영 관련 문헌 집성』, 울산광역시 중구, 2014, 33쪽.

오히려 오위의 명목(名目)과 군액(軍額)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오군영에 필요한 명목과 군액이 요구되었다.⁸⁹⁾ 조선정부는 군액을 채우기 위해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군역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1676년(숙종 2년) 반포된 「양정사핵절목(良丁査覈節目)」은 군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군액을 채울 군역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⁹⁰⁾

실제로 1672년과 1684년 사이에 『울산부호적대장』 상에서 병영이 위치한 내상면의 호적에 기재되는 구수(口數)의 급증이 확인되며 이는 군역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선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684년에서 1705년 사이에는 기재되는 구수가 감소된다. 호적 상에서 늘어난 구수가 실제로 군역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인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앙의 군문이나 관청 이외에도 지방의 병영이나 관청들 역시 조선정부의 정책에 편승해서 유아를 군정으로 파악하거나[황구침정(黃口簽丁)],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매기면서[백골징포(白骨徵布)] 허구의 군역자를 양산한 것이다.⁹¹⁾

아울러 여러 관청에서는 각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모속(私募屬)’을 벌였다. 사모속은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하거나 부담이 가벼운 새로운 직역을 창설하여 부담이 무거운 직역을 맡은 군역 대상자들을 자신의 기관에 모집하는 방식이었다.⁹²⁾ 이에 따라 군역 대상자들은 이미 다중의 역을 부담하고 있거나 무거운 역의 부담을 피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었다. 또한 여력이 있는 자는 사람을 사서 고립(雇立)하는 경우도 있었다.⁹³⁾ 이는 역 부담의 불균등과 양정의 부족을 야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정부는 군액의 상한선을 정해 정액화(定額化) 하는 양역 정책을 시행했다. 1689년(숙종 15년)에 정식화된 「각아문군병직정금단사목」은 각 관청들이 자의적으로 군역 대상자를 확보하는 사모속을 금지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18세기 말 이후 1743년(영조 19년)에 「양역실총」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한 직역의 군액을 증가시키거나 사모속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군액의 증감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였다.⁹⁴⁾

<표-9> 1672년~1708년 부내면 병영 관련 직역자 (단위 : 구)

년도 직역	1672년	1684년	1705년	1708년
각색 군병(各色 軍兵)	0	1	235	240
각색 관(各色 官)		0	32	28
각색 수(各色 手)		0	7	6
도훈도(都訓導)		0	1	0
별무사(別武士)		7	7	0
군뢰(軍牢)		13	18	19
기직(旗直)		1	2	2

89) 김종수, 「17세기 軍役制의 推移와 改革論」 『한국사론』 제22호, 1990, 134쪽.

90) 『肅宗實錄』 권5, 숙종 2년 6월 15일 丙寅 ; 송양섭, 「18·19세기 丹城縣의 軍役 파악과 운영 - 丹城戶籍大帳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40호, 2002, 297쪽.

91) 박상현, 「17세기 말~18세기 초 울산 병영의 직역과 그 성격」 『역사와경계』 제96호, 부산경남사학회, 2015, 39쪽.

92) 정연식, 「17·18 세기 良役均一化政策의 推移」 『한국사론』 제13호, 1985, 127쪽.

93) 손병규, 「조선후기 재정구조와 지방재정운영 -재정 중앙집권화의 관계-」 『조선시대사학보』 제25호, 2003, 125쪽.

94) 박상현, 「17세기 말~18세기 초 울산 병영의 직역과 그 성격」 『역사와경계』 제96호, 부산경남사학회, 2015, 40쪽.

교사(敎師)	0	1	3	3
마정(馬丁)		0	3	6
분방(分房)		1	0	0
염간(鹽干)		0	9	13
주역(廚役)		1	4	2
하전(下典)		1	16	14
궁인(弓人)		2	7	6
시인(矢人)		1	1	2
장인(匠人)		9	9	9
총 구수	0	40	347	351

실제로 경상좌병영에 소속되어 직역을 부담하는 구수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1684~1705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으며 병영 소속 직역의 등장과 그 직역자의 증가는 같은 시기 다른 면에서도 확인이 된다. <표-9>는 부내면의 시기별 병영 직역자를 정리한 표이다. 1672년에는 병영 소속 직역과 그 직역자가 확인되지 않다가 1684년 이후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는 1689년(숙종 15년)에 정식화된 「각아문군병직정금단사목」을 통해 군액을 삭감 및 제한하는 조선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선정부의 정책이 초기에는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병영은 18세기 초까지 직역자들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⁹⁵⁾

두모악들 역시 이러한 직역 확보의 일환으로 성황당리에 집중적으로 거주시키고 직역을 부여하여 관청에 소속시킨 다음, 진상품으로 바쳐야 할 전복을 채취하는 일을 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조선정부의 정책은 각 관청의 사모속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더 이상 두모악을 병영에 소속시켜 두기 힘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743년(영조 19년)에 「양역실총」이 작성되면서 군액의 정액화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군액이 정액화 된 1765년(영조 41년) 『울산부호적대장』의 도이상조에는 이전 식년에 비해, 여러 직역이 대폭 사라졌다.⁹⁶⁾ 그러나 1679년에 경상좌병영에 내려진 전복 진상 명령은 1801년(순조 1년)까지 계속되었다.⁹⁷⁾ 군액은 제한되었지만 전복을 채취할 사람은 여전히 필요했다.

3) ‘두모악’의 소멸과 ‘침수군’의 등장

호적 상에서 두모악은 사라졌지만 1765년 호적에서 나타나는 침수군(沈水軍)이라는 직역이 주목된다. ‘침수(沈水)’는 물에 잠긴다는 뜻으로 ‘침수군’은 잠수능력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심노숭(沈魯崇)이 지금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에 유배를 가서 남긴 일기인 『남천일록』에서 ‘침수군을 불러 생복(生鰓)을 사려 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⁹⁸⁾

95) 박상현, 「17세기 말~18세기 초 울산 병영의 직역과 그 성격」 『역사와경계』 제96호, 부산경남사학회, 2015, 42쪽.

96) 위의 논문, 48쪽.

97) 성범중 외 6명, 『譯主 경상좌병영 관련 문헌 집성』, 울산광역시 중구, 2014, 33쪽.

98) “招沈水軍, 欲買生鰓。” (『南遷日錄』 권1, 1802년 4월 초3일)

또한 『승정원일기』에 침수군이 익사(溺死) 해서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가 홀전(恤典)을 거행한 기록이 2건 나오는데 이 중 1건은 울산에 거주하던 침수군이다.⁹⁹⁾ 게다가 두모약과 함께 표기된 점, 부내면 성황당리에 집중적으로 거주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이들 역시 두모약처럼 물속으로 잠수하여 해산물들을 채취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침수군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1705년으로 총 3호가 확인된다.

<표-10> 1705년~1708년 침수군

년도	호주(戶主)	직역	지역	본관(本貫)
1705년	김자은지(金自隱之)	대현외성황당래부능로군 이정침수군 (大峴外城惶堂來府能櫓軍 移定沈水軍)	부내면 성황리 (府內面 城隍里)	제주(濟州)
1708년		부침수군양인두모약 (府沈水軍良人頭毛惡)*	부내면 성황당리 (府內面 城隍堂里)	제주(濟州)
1705년	최화을명(崔禾乙命)	부침수군 (府沈水軍)	부내면 성황리 (府內面 城隍里)	제주(濟州)
1708년		부침수군두모약 (府沈水軍頭毛惡)	부내면 성황당리 (府內面 城隍堂里)	제주(濟州)
1705년	이화질상(李苐叱上)	부침수군 (府沈水軍)	부내면 성황리 (府內面 城隍里)	울산(蔚山)
1708년		부침수군 (府沈水軍)	부내면 성황당리 (府內面 城隍堂里)	울산(蔚山)

* 원문에는 '府沈水軍良頭毛惡'으로 표기됨.

<표-10>는 1705년과 1708년의 침수군을 표로 정리하고 직역과 본관을 음영 처리로 강조한 것이다. 1705년의 침수군 3호는 1708년에도 기록되었다. 이 3개의 호들 중 2개의 호는 본관이 제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본관이 제주였던 호는 1708년에 모두 두모약이 함께 표기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침수군이 두모약처럼 물속으로 잠수하여 해산물들을 채취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표-11> 1705년~1765년, 침수군 호구 수

구분	총 호구	침수군 호구	총 호구 중 침수군 호구 비율(%)	총 침수군 호구 중 침수군 호구 비율(%)
1705년 부내면 성황리 府內面 城隍里	호戶	330	0.9	X
	구口	875	0.3	

99) “以庚申八月二十一日慶尙左水使狀啓, 蔚山府居沈水軍許汗奉等滄死事, 傳于韓師得曰, 滄死人等, 令本道恤典舉行。” (『承政院日記』 919책, 영조 16년 8월 21일 기미); “以慶尙左水使狀啓, 多大浦鎭等官沈水軍金雄之等滄死事, 傳于朴弼達曰, 令本道恤典舉行。” (『承政院日記』 1305책, 영조 46년 윤5월 28일 계유)

1708년	부내면 성황당리 府內面 城隍堂里	호戶	335	3	0.9	
		구口	878	3	0.3	
1726년	불명 외성황당리 不明 外城隍堂里	호戶	61	1	1.6	
		구口	137	1	0.7	
1765년	부내면 성황당리 府內面 城隍堂里	호戶	344	44	12.8	91.6
		구口	1187	47	4	92.2
	동면 독포리 東面 禿浦里	호戶	15	1	6.7	2.1
		구口	66	1	1.5	2
	동면 일산진 東面 日山津	호戶	23	1	4.3	2.1
		구口	86	1	1.2	2
	대현면 외성황당리 大峴面 外城隍堂里	호戶	138	2	1.4	4.2
		구口	658	2	0.3	3.8
1765년 소계	호戶	520	48	9.2	100	
	구口	1997	51	2.6	100	

<표-11>는 1705년부터 1765년까지 『울산부호적대장』에 기록된 침수군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1765년의 호적을 살펴보면 총 48호 51구의 침수군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4호 4구를 제외한 44호 47구의 침수군들이 부내면 성황당리에 거주했다. 약 90%의 침수군이 두모약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곳에 모여 살고 있었다.

울산은 세종 때부터 전복을 토공으로 바쳤으며 1894년에 간행된 『영남영지(嶺南營誌)』 「좌병영부사례(左兵營附事例)」에 따르면 경상좌병영은 2달에 1번, 생복(生鰯)과 숙복(熟鰯)을 150개씩 바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1년에 1800개의 전복을 중앙에 상납해야만 했다. 1684년부터 두모약들을 성황당리에 집중적으로 거주 시킨 점과 1705년과 1708년 사이에 두모약이 해체되어 가는 조짐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울산에서는 두모약들을 침수군으로 재편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제주유민이라는 부류에 근거해 스스로 유지되던 집단이 울산민에 동화되면서 해체되어가자 병영이 개입하여 특정지역에 거주시키며 직역을 부여하는 등 집단적 관리와 개인의 역 사이의 과도기적 방식으로 넘어갔다. 18세기 초반에 이르면 두모약이라는 구분은 남아있지만 보통의 울산민들처럼 직역이 부과되었다. 이는 두모약들이 제주 출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울산민에 동화되면서 해체되어갔음을 추정케 한다.¹⁰⁰⁾ 1765년에는 더 이상 두모약과 같은 집단에 대한 관리는 없었다. 침수군이라는 직역을 가지고 진상을 위한 전복을 공급하는 울산민만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호적 상에서 침수군들의 가계 중 이전의 호적 기록과 연결된 가계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1708년과 1765년 사이에 57년간 호적 기록의 공백이 있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사조 정보를 통해 세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1708년에 침수군을 겸한 두모약이 나타나는데도 1765년 침수군 중 1765년 이전 식년의 호적과 연결되는 사례는 등장하지 않는다.

추정하자면 침수군은 전복 공납과 군역 제한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조선정부의 명령 속에서 생겨난 직역이다. 울산에서는 전복을 공납하기 위해 물질에 능한 두모약이 필요했지만,

100) 한영국, 「豆毛岳考」, 『韓渚廸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 서울: 지식산업사, 1981, 822쪽.

조선정부에서는 각 관청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울산에서는 더 이상 두모악을 함부로 소속 시킬 수 없었다. 즉, 울산에서는 해체되어가는 두모악들을 침수군으로 전환시키면서 호적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변조해 조선정부의 군역 제한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표-12> 『울산부호적대장』에 나타난 정보 변조 사례

년도	호주(戶主)	직역	거주지	본관(本貫)
1705년	김자은지 (金自隱之)	대현외성황당래부능로 군이정침수군 (大峴外城隍堂來府能槽 軍移定沈水軍)	부내면 성황리 (府內面 城隍里)	제주(濟州)
1708년		부침수군양인두모악 (府沈水軍良人頭毛惡)*	부내면 성황당리 (府內面 城隍堂里)	제주(濟州)
1720년		부능로군 (府能槽軍)	대현면 외성황당리 (大峴面 外城隍堂里)	제주불유울산 (濟州不喻蔚山)
1726년		부능로군 (府能槽軍)	외성황당리 (外城隍堂里)	울산(蔚山)
1705년	김귀량 (金貴良)	양인두모악향소군 (良人頭毛岳鄉所軍)*	부내면 성황리 (府內面 城隍里)	제주불유김해 (濟州不喻金海)
1708년		양인두모악향소군 (良人頭毛岳鄉所軍)*	부내면 성황당리 (府內面 城隍堂里)	울산(蔚山)
1705년	김상복 (金上卜)	양인두모악부군 (良人頭毛岳府軍)*	부내면 성황리 (府內面 城隍里)	제주 (濟州)
1708년		두모악부군 (頭毛岳府軍)	부내면 성황당리 (府內面 城隍堂里)	제주불유울산 (濟州不喻蔚山)
1705년	박산이 (朴山伊)	양인두모악부군 (良人頭毛岳府軍)*	부내면 성황리 (府內面 城隍里)	제주 (濟州)
1708년		두모악양인 (頭毛岳良人)*	부내면 성황당리 (府內面 城隍堂里)	제주불유울산 (濟州不喻蔚山)

* 원문에는 ‘양인(良人)’이 ‘양(良)’으로 표기됨.

실제로 호적 상에서 두모악의 정보가 바뀌는 사례가 4건이 나타난다. <표-12>는 4건의 사례를 표로 정리 한 것이다. 음영 처리로 강조한 본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본관은 제주(本濟州)’로 표기되던 것이 ‘본관은 제주 아니면 울산(本濟州不喻蔚山)’이라고 표기된다. 이후에는 ‘본관은 울산(本蔚山)’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호적 정보의 변화는 제주유민이라는 출신에 근거한 두모악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던 것이 점점 개별적인 역의 부과라는 방식으로 바뀌어 갔고, 조선정부의 군역 제한을 계기로 두모악들은 침수군이라는 역을 맡은 울산민으로 거듭난 것을 추정케 한다. 동시에 두모악들 역시 더 이상 출신에 따른 구분을 거부하고 울산민이 되려했다. 관청과 두모악, 양자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1708년 이후와 1765년 사이에 추가적인 정보의 변조를 통해 이전 식년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끊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두모악이라는 집단은 사라지고 침수군이라는 개별적인 직역만이 남아 간접적인 명맥을 이어간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울산부호적대장』을 통해 조선시대 울산 지역의 두모약의 추이를 정리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료의 부족으로 1629년의 출륙 금지령 이후를 추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울산 지역은 장기간에 걸친 호적 자료가 남아 있으며 전산화 역시 진행되었기에 울산을 특정하여 두모약들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제주도는 자연적, 지리적 특성상 농업이 아닌 수산업을 중심으로 기타 생산업을 해야만 했고, 배를 타고 육지로 나아가 무역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 시기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반 독립적인 세력이었지만 조선이 건국되고 중앙집권적 기조 아래 큰 변화를 맞이한다.

조선은 제주도가 농사가 불가능한 것을 파악하고 제주도의 특산물과 특산물 생산을 위한 역을 세금으로 책정했다. 특산물의 책정은 제주도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했다. 더군다나 제주도의 토착세력들을 조선정부로부터 토관직을 수여받아 중앙에서 파견 나온 수령과는 별개로 제주도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주도민들을 약탈했다. 견디지 못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를 이탈해 유민이 되었다. 제주유민들은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남·서해안 일대를 떠돌아다니며 유랑을 했다. 그러다 연안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두모약이라 명명되었다. 정착한 두모약들은 포작 혹은 수군으로 편입되어 실질적으로 국가의 역을 수행했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수령들은 두모약들을 제주도로 돌려보내야 했지만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며 유랑하던 이들의 능력은 큰 이익을 가져다줬다. 특히 제주도처럼 해산물을 바쳐야 하는 연안지역의 수령들은 그들을 돌려보내기는커녕 이들을 흠어지지 않게 잘 모아서 자신의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수군에서 역시, 두모약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했다. 수군은 역이 고되고, 온갖 요역에 동원되었기에 친인이나 죄인 등으로 충원해야 했을 정도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군의 질은 떨어져갔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모약은 수영에 소속되어 배를 부리는 핵심적인 위치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울산부호적대장』에는 5개 식년에 걸쳐 두모약들이 기록되었다. 다른 자료에서는 알 수 없는 두모약들의 신상정보가 수록되었다. 두모약들이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1609년이다. 남면 대대여리, 온양리 등에 거주하며 숫자는 17개 호(戶) 뿐이지만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데 호주는 물론 호주의 아버지에서 증조 및 외조가 모두 두모약으로 표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호주의 아내와 그 아버지에서 증조 및 외조까지도 두모약으로 나타난다. 이는 두모약들이 울산민과 구분되는 별개의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모약들은 울산민들과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이어갔다.

약 70여 년 후인 1672년이 되면 부내면의 백련암리(白蓮巖里)에 집중적으로 거주했으며 호수가 187호로 1609년에 비해 약 12배 증가했다. 호적 기록의 손실을 감안해도 자연적인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1609년과 1672년 사이의 두모약들은 가계가 연결되지 않는다. 결국 1672년의 두모약들은 1609년과 출륙 금지령이 내려지는 1629년 사이에 제주에서 이탈하여 울산에 정착한 제주유민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두모약이라는 명칭은 남성 호주에게만 표기된다. 이는 두모약이라는 부류를 집단으로써 관리하던 것을 일반적인 울산민들처럼 개인에 대해 역을 부과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12년 후인, 1684년에는 1672년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거주지가 백련암리(白蓮巖里)에서 신설된 성황당리(城隍堂里)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12년 만에 약 200개의 호가

거주지를 옮긴 것은 자연적인 이주라기보다는 별도의 통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679년에 경상좌병영에 전복을 진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두모악들을 집중적으로 거주시켜 육지민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진상을 위한 전복을 쉽게 거두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집중 거주는 두모악이라는 부류를 집단으로써 관리하는 방식과 일반적인 울산민들처럼 역을 부과해 관리하는 방식 사이의 과도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 초인 1705년과 1708년에 이르면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이제는 두모악이라는 명칭에 다른 직역들이 함께 표기되기 시작했다. 여러 직역들 중에서도 병영군(兵營軍)과 부군(府軍)의 비율이 높다. 여전히 두모악이라는 구분이 남아있지만 보통의 울산민들처럼 직역을 부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한 것이다.

이후 1720년 대현면 외성황당리에 단 1명이 나오는 것 이외에는 호적에서 두모악은 사라졌다. 1749년에 작성된 읍지인 『학성지』에 두모악들이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1749년까지는 두모악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조(四祖) 정보와 자녀 정보를 통해 찾아봐도 다음 식년과 이어지는 가계를 찾을 수 없다. 이주나 전염병같이 큰 인구변동에 대한 기록이 없고 경상좌병영의 전복 공납 역시 계속되었다.

호적 상에서 두모악이 사라진 이유는 조선정부의 양역 정책으로 인한 각 관청의 군액 제한으로 추정된다. 울산에서는 더 이상 자의적으로 두모악들을 모집해 소속시키기 힘들어진 것이다. 두모악들 역시 제주 출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출신에 따른 구분을 거부했다. 이렇게 관청과 두모악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울산에서는 해체되어가는 두모악들을 침수군이라는 새로운 직역으로 전환시켰다고 추정된다. 호적에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정보를 변조해 이전 식년과의 연관성을 없앴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울산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현재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도 확인되며 경상도 인근의 해안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두모악과 침수군 사이의 관계는 방증으로 추정을 할 뿐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단순히 두모악이나 침수군만이 아닌 울산의 해양과 관련된 직역을 가진 인구들과 비교 및 분석하고 울산 전체에서 조선정부의 해산물 공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
『南槎錄』
『南槎日錄』
『南宦博物』
『備邊司謄錄』
『李忠武公全書』
『朝鮮王朝實錄』
『耽羅錄』
『鶴城誌』

2. 논문 및 저서.

『울산 역사 속의 제주민 -두모악·해녀 울산에 오다-』, 울산대곡박물관, 2016.

『譯註 濟州古記文集』, 제주문화원, 2007.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7.

성범중 외 6명, 『譯主 경상좌병영 관련 문헌 집성』, 울산광역시 중구, 2014.

이종서 역,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제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김나영, 「조선후기 호적자료를 통해 본 鮑作의 사회적 지위」 『탐라문화』 제3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김동전, 「18·19세기 沓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 濟州 大靜縣 戶籍中草의 분석」 『역사민속학』 제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김동전,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1991.

김중수, 「17세기 軍役制의 推移와 改革論」 『한국사론』 제22호, 1990.

김태능, 「濟州島民의 流亡과 出陸禁止」, 『탐라문화』 제27호, 1966.

박상현, 「17세기 말~18세기 초 울산 병영의 직역과 그 성격」 『역사와경계』 제96호, 부산경남사학회, 2015.

박찬식,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탐라문화』 제16호, 탐라문화연구소, 1996.

박찬식,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회』 제1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손병규, 「조선후기 재정구조와 지방재정운영 -재정 중앙집권화의 관계-」 『조선시대사학보』 제25호, 조선시대사학회, 2003.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와 特徵」, 『탐라문화』 제2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이영권, 「15~17세기 제주유민의 사회사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종서, 「박명부(朴明搏)의 ‘울산민폐소(蔚山民弊疏)’」, 『울산사학』 제14집, 2009.

- 이재룡, 「朝鮮前期의 水軍 -軍役關係를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제5호, 1970. 132쪽.
- 장윤희 「조선후기 제주도 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실태와 사회적 지위」 『역사와경계』 제69호, 부산경남사학회, 2008.
-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제2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 정연식, 「17·18세기 良役均一化政策의 推移」 『한국사론』 제13호. 1985.
- 한영국, 「豆毛岳考」, 『韓祐勳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 서울: 지식산업사, 1981.
- 나가모리 미쯔노부(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조선시대사학보』 제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濟州島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와 고려」 『도서문화』 제20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2.

<ABSTRACT>

Occurrence of Jeju Migrants in Choseon Dynasty
Period and ‘Dumoak[豆毛惡]’ in Ulsan District

Song Yun-Cheol

Department of Korea History and KoreaCulture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Dumoak is another name for Mt. Halla. It was also called by Dudokyaji(豆禿也只), Dumuak(頭無惡), Dumuak(頭無岳), and Dumoak(豆毛岳). It was a term to refer to Jeju migrants that left the Jeju Island and settled down in the southern coast in Choseon.

There are not many previous studies on Dumoaks, and the biggest reason behind it is the shortage of materials. There has been an ongoing flow of researches on migrants, but most of them dealt with farmers that left land and agriculture. Marine migrants according to distinct local characteristics such as Dumoaks have been neglected in common researches. Previous studies analyzed cases to figure out the process of Jeju people becoming migrants and their family registers, providing research achievements. Due to the shortage of materials, however, they were not able to cover Dumoaks after 1629.

In July, 2012, they embarked on the "Computerization Project for the Census Registers of Ulsan."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it became easier to use and analyze materials about the Dumoaks that lived in Ulsan. The computerization work was completed for the registers of 1609, 1672, 1684, 1705, and 1708 when Dumoaks were recorded, which made it possible to analyze Dumoak cases in the Ulsan area. Since family registers consistently recorded census information, they were helpful for analyzing family tre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arranging their flow.

Chapter 1 introduced the subjects of the paper, sorted out the history of previous studies, and covered materials needed to analyze the subjects and also the methods to analyze and arrange them.

Chapter 2 put together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and primary materials such as the Annals of the Choseon Dynasty, analyzing the causes and reasons behind their leaving of Jeju Island and explaining the places where Jeju migrants settled down and the backgrounds behind their settlement. It was impossible to survive only on commerce and agriculture due to its natural and geographical features. On the island, people lived on such trade goods as marine and ranching products. After Choseon was founded, people on the island were burdened with excessive taxations and resulting corrupt exploitations. Those who were not able to endure them became migrants

called Dumoaks, who settled down along the coast of land. In the concerned areas, Suryeongs(守令) were supposed to send them back, but their abilities of fishing on a boat and migrating brought them huge benefits. The Suryeongs of coastal areas, which had to present marine products to the government like the Jeju Island, gathered them together tight and induced them to settle down in their areas right instead of sending them back. The Dumoaks also exerted their abilities in the naval forces. Since the members of the naval forces had to endure difficult work and be mobilized for all kinds of government labor, they had to recruit even lowly men or criminals. The quality of the naval forces dropped over time, in which context Dumoaks rose to essential positions to sail a boat in Suyeong(水營).

Chapter 3 analyzed the computerized "Census Registers of Ulsan," analyzing and arranging the particular cases of "Dumoaks that lived in Ulsan" and checking their progress. The registers contain records about the Dumoaks over five recoding years includ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not found in other materials. They were mainly divided into the 17th and 18th century. In the early 17th century, the Dumoaks formed a separate group distinguished from the residents of Ulsan and were, at the same time, Jikyeok(職役). They were not assimilated with the residents of Ulsan and continued their practice of closed marriage relations. By the late 17th century, their residence became fixed at one place with stronger control over them by the government office. The name Dumoak gradually referred to Jikyeok rather than the group. In the early 18th century, the Dumoaks had such Jikyeoks as Byeongyeonggun(兵營軍) and Bugun(府軍) marked next to their names, which indicates that they were increasingly closer to the status of residents in Ulsan. In 1720, they disappeared from the census register after the single last case at Oiseonghwangdangri(外城隍堂里), Daehyeonmyeon(大峴面). Their disappearance from the census register is estimated to have been attributed to the limited Gunaek(軍額) of each government office after the Choseon government introduced the Yangyeok(良役) policy. In Ulsan, it was no longer easy to recruit the Dumoaks voluntarily and have the affiliated with the institution. It is estimated that the Dumoaks were converted into Chimsugun(沈水軍) in 1765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As early as the early 18th century, there were records about the Dumoaks that doubled as Chimsugun and the alteration of census information for some Dumoaks. These made the Dumoaks reject their bridle and distinction as Jeju natives and try to become residents of Ulsa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Ulsan, where there was an agreement of interest between the government office and the Dumoaks, altered their information in the family register, eliminated their connections to the previous recodin year, and converted them in a dissolution process into a new Jikyeok called Chimsugun.

Keyword : Jeju, Jeju island, Migrants, Jeju migrants, Dumoak, Family Register, Cencus Register in Ulsan
